

【 주간포커스 】

## IFRS 시행과 비상위험적립금

김해식 전문연구위원

2011년 기업회계기준이 국제회계기준(IFRS)으로 변경되면 비상위험준비금은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내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7천억원 이상의 법인세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. 그런데 비상위험준비금은 통상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거대 손실에 대비하여 감독당국이 평상 시 적립을 강제하는 일종의 안전기금이다. 기금관리가 보험회사 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만 다를 뿐 예금보험기금과 목적이 본질적으로 같다. 따라서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분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현행 체제의 유지가 바람직하며, 이를 위해 세제당국은 동준비금이 결산재무제표 상 부채로 표시되지 않더라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신고조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.

- 2011년 국제회계기준(IFRS: Internation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)이 적용될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이 부채에서 자본으로 분류됨에 따라 국내 손해보험회사는 최소 7천억원의<sup>1)</sup>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
  - 손해보험의 비상위험준비금의 경우 현행 회계기준에서는 부채로 인정되었으나 IFRS에서는 자본으로 분류<sup>2)</sup>
  - 또한, 세제당국은 결산 재무제표에 표시된 경우에만 보험회사의 비상위험준비금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 방식을 택하고 있음<sup>3)</sup>.
  - 따라서 결산조정 방식의 세무조정이 유지되는 한 IFRS 시행으로 자본계정에 표시될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해 법인세 부과는 불가피
    - 이 경우 비상위험준비금이 환입 또는 이익잉여금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법인세 부과로 인한 준비금 감소가 필연적이기 때문에 손해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악화됨.

1) 손해보험산업 전체의 비상위험준비금 적립분에 대해 20%의 법인세율을 적용한 경우

2) IFRS 4(K-IFRS 1104), 문단 15.

3) 손해보험회사는 법인세 과세표준(과세대상 소득금액) 신고 시에 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.

- 비상위험준비금은 손해보험회사가 자연재해 등 거대 손해에 대비하여 적립하는 안전기금임.
  - 손해보험회사는 재무건전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대위험 또는 비상위험(catastrophe risks)에 대비하여 자본과는 별도로 안전기금을 적립
  - 비상위험준비금은 예금보험기금과 목적에 있어서 유사하나 동 준비금은 보험위험을 대상으로 보험회사 내부에서 관리되는 반면, 예금보험기금은 금융위험, 특히 시스템위험을 대상으로 외부에서 관리된다는 차이가 있음.
  
- 이러한 비상위험준비금의 목적과 부합되도록 현행 국내 회계기준은 동 준비금을 부채로 인정
  - 감독규정은 물론 일반회계기준(K-GAAP)인 보험업회계처리준칙에서도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인식
  - 최근 감독당국은 동 준비금의 적립과 환입 기준을 강화하여 보험위험에 기인하지 않은 결손 보전 등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음<sup>4)</sup>.
    - 또한 비상위험준비금 사용 기준이 전체 보험료에 의한 손해율 대신 위험보험료에 의한 손해율로 강화되었고, 종목별 특성에 따라 준비금 적립율도 차별화됨.
  - 감독당국은 IFRS가 도입되더라도 비상위험준비금의 강제 적립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음.
  
- 이에 반해 IFRS는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비상위험준비금의 부채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.
  - IFRS가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동 준비금을 당기이익의 규모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
    - IFRS는 현재 유효한 보험계약에 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추가로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은 이중 적립의 문제가 있고,
    - 이미 만료된 보험계약의 적립분이 환입되지 않고 있는데, 이는 과거 계약으로부터 미래 발생할 총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으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
  - 그러나 안전기금 적립이라는 측면에서 통상의 범주를 벗어난 위험에 대한 준비금 적립을 이중 적립으로 보기는 어렵고, 보험계약의 소멸 여부와 관계없이 동 준비금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점이 세무조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음.

4) 금융감독원, 「비상위험준비금제도 개선」, 보도자료, 2005.2.25.

□ 전 세계적으로 IFRS 시행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세금 문제가 제기된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사례임.

- 외국에서는 일반회계기준으로서 IFRS 이외에 자국의 기존 GAAP을 병행하거나, 감독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등을 과세 기준 장부로 인정하고 있음.
  - IFRS 시행에도 불구하고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과세 문제가 없음.
- 반면 국내 세제당국은 일반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된 결산재무제표에 부채로 표시된 보험회사 준비금에 대해서만 손금으로 인정하는 결산조정을 요구함.
  - 보험회사의 경우 2011년부터 기존 K-GAAP은 인정되지 않고 IFRS만 적용되므로 법인세 산출의 근거가 되는 일반회계기준은 IFRS 하나밖에 없게 됨.
- 따라서 IFRS에서 자본으로 표시되는 비상위험준비금은 법인세 결산조정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자본전환에 따른 과세가 불가피함.

□ 안전기금으로서 비상위험준비금의 역할이 유지되는 한 이에 상응한 세제 유인이 지속되어야 하고, 이를 위해 신고조정이 허용될 필요가 있음.

- 비상위험준비금은 거대 손실에 대비한 개별 기업 차원의 안전기금이므로 이에 대한 세제 유인이 지속될 필요가 있음.
- 현행 세무조정 체제에서는 신고조정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.
  - 손금 인정이 가능하려면 법인세 산출 근거인 재무제표의 작성을 일반회계기준에 한정하지 않고 다원화하거나 신고조정을 허용해야 함.
  - 재무제표 작성을 다원화할 경우 일반회계기준에 대한 세무회계의 의존도가 여전히 크고 시행에도 상당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으나 신고조정은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
-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한 신고조정 허용이 결산조정의 장점<sup>5)</sup>을 희석시킬 가능성은 미미하므로 신고조정을 허용하여 동 준비금의 적립과 환입을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.
  - 건전성 감독규정을 따르고 있는 비상위험준비금에 대하여 신고조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증빙력과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는 낮음.KiRi

5) 결산조정은 일반회계와 세무회계 간 상호 검증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.